#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9

발의연월일: 2024. 7. 15.

발 의 자:임호선·이학영·권칠승

최기상 · 강경숙 · 오세희

복기왕 • 이병진 • 송옥주

윤준병 • 주철현 • 이원택

송재봉 · 강준현 · 정준호

이연희 의원(16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변화로 인하여 꿀벌의 집단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꿀벌 개체수 감소가 양봉산업은 물론이고 후방산업으로서 나무의 수분(受粉)을 꿀벌에 의존하는 과수농업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산림 등에 자생하는 초목의 생식에도 영향을 주는 등 꿀벌의 산업적, 생태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벌꿀의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밀원식물(꿀벌이 꽃 꿀,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)에 대하여는 그 증식·확충 등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지원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, 정작개체수 확보 등 꿀벌의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조항은 두고 있지아니함.

한편 현행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면 생물

자원 보전시설을 통해 위기동물을 보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생태학적 중요성이 큰 꿀벌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보호 및 관리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꿀벌의 보전,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꿀벌의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양봉·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조의2(꿀벌 보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꿀벌의 보전, 분양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(이하 "꿀벌 보 전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그 밖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14조의2(꿀벌 보전시설의 설치
	·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
	관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
	꿀벌의 보전, 분양 등을 위하여
	<u>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</u>
	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
	전시설(이하 "꿀벌 보전시설"이
	라 한다)을 설치・운영할 수
	있다.
	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
	<u>•군수•구청장이 꿀벌 보전시</u>
	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예
	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
	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	③ 그 밖에 꿀벌 보전시설의
	설치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	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
	<u>다.</u>